

2013 년도 귀속
반석 급여 연말정산

(주) 반 석 시 스 템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 길 28
우림이비지센타 1 차 702 호

TEL 797-5751, FAX 797-4106

▣ 연 말 정 산 방 법

1. 연말정산시기

- ① 2014.2월 급여/상여금 - 간이세액표 의거 징수하여 다음달 10일 (3월 10일)까지 납부
- ② 20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2014.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 ※ 2014.2월분 급여를 2014. 2. 28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4. 2. 28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세액은 2014. 3. 1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2014년 2월 분에 연말정산분까지 포함하여 2014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며,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 했을 경우 2014년 2월분 징수액 납부 시 차감 조정하여 나머지 금액만 납부 합니다.

2. 연말정산 방법 및 순서

- ① 월별 급여/상여 지급합계표와 연간 개인별 지급총합계표를 출력하여 회계장부와 대조할 것
 - ※ 2013년도 -> 각종양식 프린트 -> 연말정산 자료 -> 월별 급여/상여 지급합계표 (프린트)
연간 개인별 지급총합계표 (프린트)
- ② 2013년도에서 -> 연말정산 -> 12월말 **연말정산 작업시작**
- ③ 2014년도에서 -> 2014. 2월분 급여를 간이세액으로 계산
- ④ 2014년 2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 분 합산조정 하는 방법
 - ※ 2013년도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세액 공제일자 입력]을 통하여 2014년 급여/상여에 차감조정 할 수 있습니다. (적용일자 지정)

3. 2013 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참조

★ 연말정산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으니 급여프로그램을 UP-GRADE 받으신 후에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2012 년 귀속	2013 년 귀속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신설>	*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공제금액 : 연 100 만원 *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공제대상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 초·중·방과후학교 수업료 (교재구입비 제외)	* 공제대상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취학 전 아동) 급식비 -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및 체육시설(취학 전 아동)의 방과후 수업료와 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포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 지로영수증: 20% - 전통시장 사용분: 30% - <추가> * 공제한도 - min(300 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 만원 - <추가>	* 공제율 - 신용카드: 15% (학원 지로영수증 공제 삭제) - 현금영수증·직불(체크)·선불카드: 30% - 전통시장 사용분: 30% - 대중교통 이용분: 30% * 공제한도 - min(300 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 만원 -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 100 만원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변경	*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간 1,000 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간 1,000 분의 3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	<서식 추가>	*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추가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삭제	* 장기주택저축마련저축의 40% *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액 5%	*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12.31) 종료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좌동)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	<신설>	* 이주수당 비과세 대상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 - 비과세 금액: 월 20만원 이내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및 기한연장	*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투자금액 10% -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직접투자: 투자금액의 2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40% * 적용기한: 2012. 12. 31	* 소득공제율 - (좌동) -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직접투자: 투자금액의 4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40% * 적용기한: 2014. 12. 31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과세특례 기한연장	* 공제율: 임금감소액의 50% * 공제한도: 1,000만원 * 적용기한: 2012. 12. 31	* 적용기한: 2015. 12. 31
목돈 안 드는 전세 소득공제 신설	<신설>	* 목돈 안 드는 전세 과세특례 요건 - (임대인)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차입 - (임차인)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3천만원 (수도권 5천만원) - (대출이자) 주택 임차인이 상환 * 공제금액: 임대인이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연 300만원 한도) “13.08.13 일 이후 차입/상환 분부터 * 적용기한: 2015. 12. 3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추가> *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금액 - 공제율: 월세 지출액의 40%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 좌동 *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금액 - 공제율: 월세 지출액의 50% - 좌동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원양·외항선원) 월 200만원 -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 비과세 한도 인상 - 월 200만원 → 월 300만원 - (좌동)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범위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월정액급여) 월 100만원 - (총급여액) 연 2,000만원	* 비과세 요건 변경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 연 2,000만원 → 연 2,500만원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의 범위 명확화	* 연금보험료 대상 - 국민연금 보험료 -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상 근로자 부담금	* 연금보험료 대상 - 공적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신설>	*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 공제한도: 2,500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등, 우리 사주조합, 창투조합등 출자(2013년 분),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한도제외 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 공제, 4대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법정 기부금, 장애인 관련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적용배제) - 적용기한: “12.12.31	* 단일세율 인상 - 15% → 17%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적용배제) - 적용기한: “14.12.31 (2년 연장)

4. 연말정산 사전작업

4. 연말정산 ▶ 6. 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프린트하여 공제내역이 있는 사원에게 배포 후 회수한 내용으로 입력하시면 편리하게 연말정산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및 출력, 저장

5-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소득공제 영수증)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로, 근로소득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내역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5-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추가됨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주택자금(무주택 세대주), 주택마련저축(무주택 세대주), 연금, 기부금, 기타 공제항목에 대한 정보를 출력할 수 있으며, 간소화 사이트에서 집계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5-3. 근로자가 소득공제자료 조회 후 프린트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소득공제 증명서류 전자파일 다운로드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한다.

○ 항목을 클릭하면 항목별 금액 및 지출처별 지출금액이 조회되며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메뉴를 이용하여 소득공제증명자료 조회 후,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 버튼 클릭

○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화면에서 한 번에 출력할 항목들이 모두 체크되었는지 확인 후 [인쇄] 버튼 클릭

※ 소득공제조회 항목을 클릭하면 월별(일자 별) 지출(사용)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4. 근로자가 소득공제자료 조회 후 전자파일(PDF 파일) 생성

(필독1) 단, PDF 제공하여 연말정산 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존 종이만 출력하여 연말정산 진행 시 PDF 파일 다운로드 과정은 생략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 www.yesone.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직접 입력 →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소득공제자료 조회.다운로드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한다.
- 항목을 클릭하면 항목별 금액 및 지출처별 지출금액이 조회되며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메뉴를 이용하여 소득공제증명자료 조회 후, “조회한 항목 한번에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버튼 클릭

- [조회한 항목 한번에 다운로드하기]화면에서 한 번에 출력할 항목들이 모두 체크되었는지 확인 후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여 **전자문서를 다운로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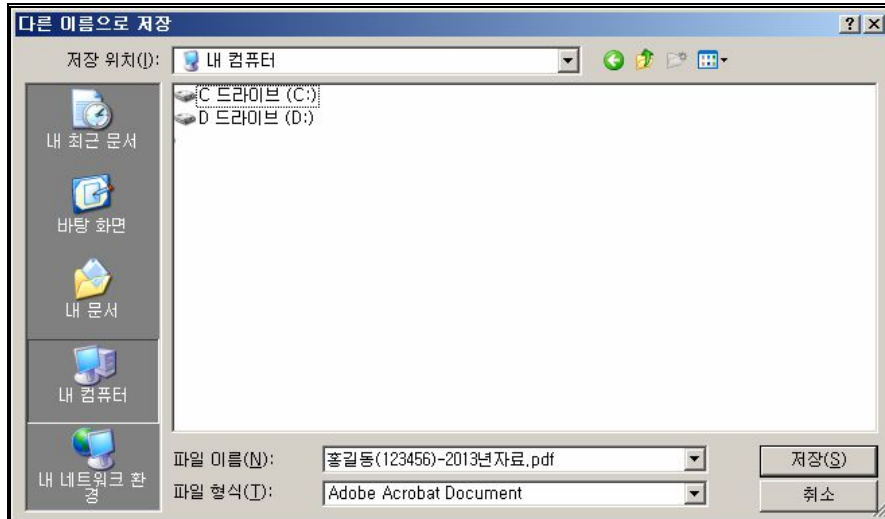
※ 소득공제조회 항목을 클릭하면 월별(일자 별) 지출(사용)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 다운로드 시 문서의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자동 설정) 설정이 가능합니다.

※ 파일명은 기본적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항목명. PDF”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 다음과 같은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저장” 버튼 클릭

- “저장 위치” 지정 후 “저장” 버튼을 클릭



(3) 다운로드 한 전자문서 활용하기

- 근로자는 다운로드 한 전자문서를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한다.
 - “종이 없는 연말정산” 환경을 제공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다운로드 한 전자문서를 소득공제증명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소득공제자료 활용 방법

(1) 근로자는 출력한 자료를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금액이 정확하다면, 이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에게 제출한다.
중도 입사(퇴사)자는 월별 지출금액(의료비는 일자별 지출금액)을 출력하여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 서비스 제공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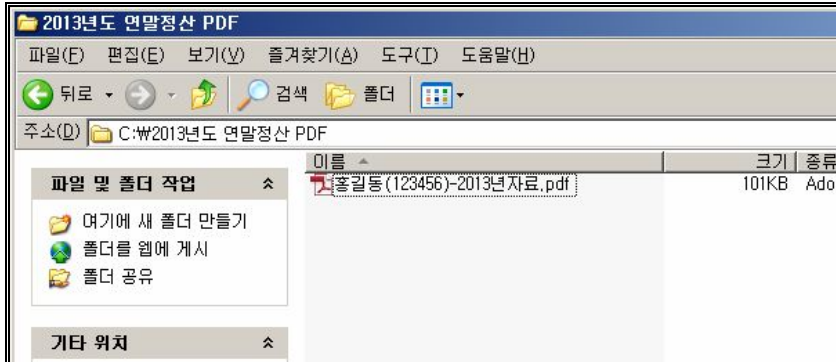
‘1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작년과 같이 2014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금번 ‘13년 귀속 연말정산 때는’ 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사용)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상담문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상담센터(☎126 ⇨ 내선 7)

7. PDF(전자문서)파일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 PDF(전자문서) 파일 적용하여 연말정산 진행 (PDF 파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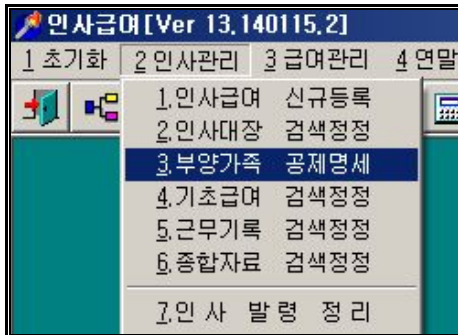
* PDF(전자파일)가 없거나 이전처럼 종이자료(소득자 소득공제신청서) 기준으로 연말정산 진행 시
 “3. 연말정산 작업안내” 메뉴 21page 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7-1. 내 컴퓨터 -> C:\W 이동 -> C:\W2013년도 연말정산 PDF 폴더 생성 후 -> PDF 파일을 복사한다.



7-2. PDF 파일 적용 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미리 등록해 놓으실 경우 편리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 부양가족 공제내용이 있을 경우 이름과 주민번호를 check 하여 공제내용이 자동 반영됩니다.)

반석급여 로그인 ▶▶ 2. 인사관리 ▶▶ 3. 부양가족 공제명세



부양가족공제명세

사원: 123 <홍길동> 라면신규(F5) 라면삭제(F6) 미전사원(F7) 다음사원(F8) 프린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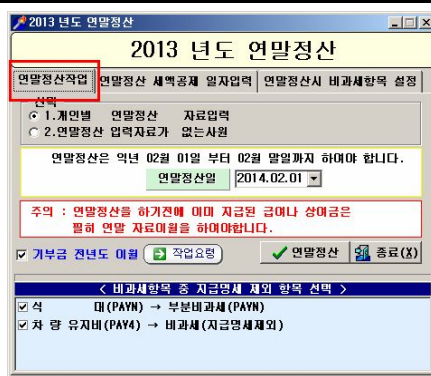
관계	내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	다자녀	출산.입양자	한부모
0	1	홍길동	123456-1234567	1	(65-69세)	70세이상					
3	1	배우자	123456-2234567	1							
4	1	자녀	123456-3234567	1							
※. 본인 1. 소득자 직계존속 2. 배우자 직계존속 3. 배우자 4. 직계비속 5. 직계비속외 6. 형제자매 7. 수급자 8. 위탁아동											
합 계			3	3	0	0	0	0	0	0	0

※. 근로자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부녀자의 경우 공제를 받기 위해선 관계코드 "0" 인 자료가 입력되어야 함.
 ※. 관계코드: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자녀=4, 직계비속 자녀외=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4, 5, 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 공제대상자의 경우 '1' 표시
 ※. 내외국인코드 : 내국인1, 외국인9 ※. 다자녀 제외 : 9

전사원 액셀변환 부양가족 0000000000 0 0

인사관리(I) 저장(S) 취소(C)

7-3. **반석급여 로그인** ▶▶ **4. 연말정산** ▶▶ **1. 12월말 연말정산작업**



2013년도 연말정산

연말정산작업 연말정산 세액공제 일자입력 연말정산시 비과세항목 설정

선택

1. 개인별 연말정산 자료입력

2. 연말정산 입력자료가 없는사원

연말정산은 액년 02월 01일 부터 02월 말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일 2014.02.01

주요 : 연말정산을 하기전에 대대 지급된 급여나 상여금은
발해 연말 자료입력을 하셔야합니다.

☒ 기부금 전년도 이월 ☒ 작업요청 ☒ 연말정산 ☒ 종료(X)

< 비과세항목 중 지급명세 제외 항목 선택 >

☒ 석 대 (PAYN) → 부분비과세 (PAYN)

☒ 차 당 유자비 (PAY4) → 비과세 (지급명세서제외)

1. 개인별 연말정산 자료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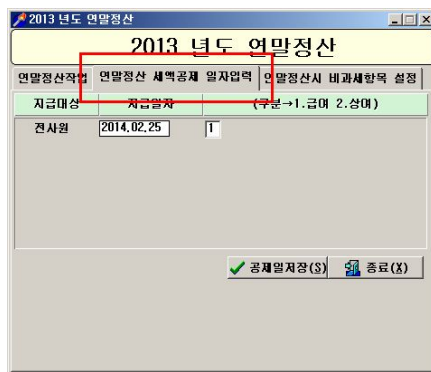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으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나 특별공제가 있는 경우 선택진행

2. 연말정산입력자료가 없는 사원

기본공제 외 다른 사항이 없는 경우 일괄 계산이 됩니다.

(추가메뉴) 기부금 전년도 이월 (V 체크) 확인

(기존사원) 2012년도 기부금 이월금액이 있을 경우 이월 반영됩니다.



2013년도 연말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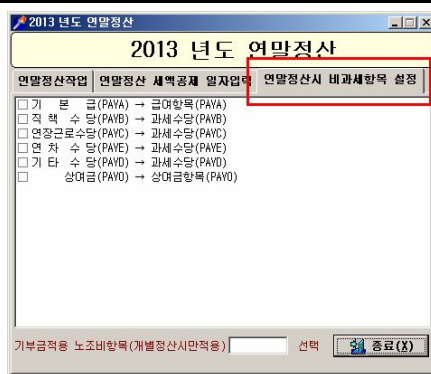
연말정산작업 연말정산 세액공제 일자입력 연말정산시 비과세항목 설정

지급대상 지급일자 (부분→1.급여 2.상여)

연사원 2014.02.25 1

☒ 공제일자장(S) ☒ 종료(X)

* 연말정산 급여 반영일자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월 급여 일자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해당하는 일자의 공제항목에 연말정산란이
보여지며 소득세, 주민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집계됩니다.)



2013년도 연말정산

연말정산작업 연말정산 세액공제 일자입력 연말정산시 비과세항목 설정

☐ 기본 급여(PAY4) → 급여항목(PAY4)

☐ 직책 수당(PAY5) → 과세수당(PAY5)

☐ 연공로수당(PAY6) → 과세수당(PAY6)

☐ 연차 수당(PAY7) → 과세수당(PAY7)

☐ 기타 수당(PAY8) → 과세수당(PAY8)

☐ 상여금(PAY9) → 상여금항목(PAY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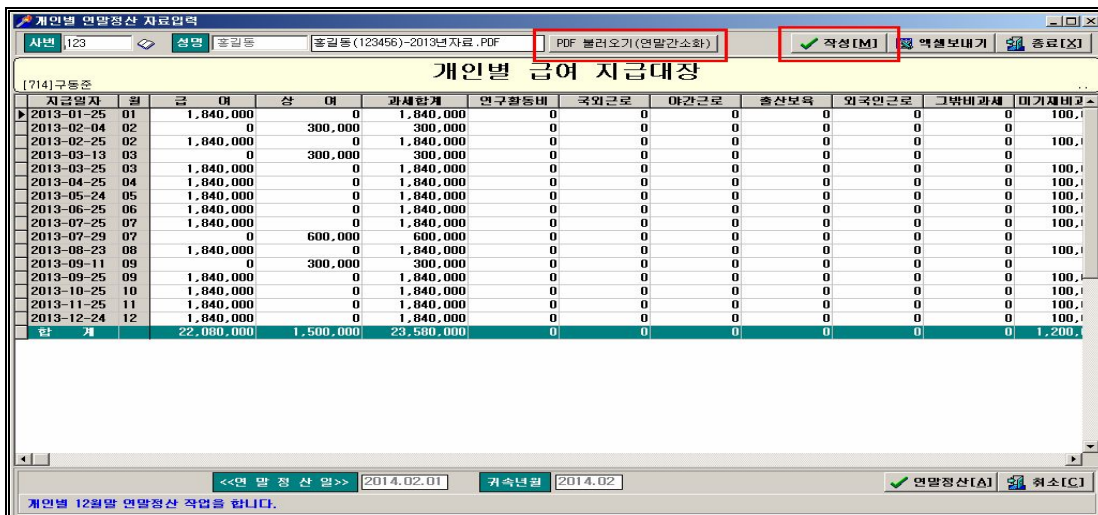
기부금적용 노조비항목(개발정산시만적용) 선택 ☒ 종료(X)

* 당해 년도 지급된 급여 중 비과세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선택하는
화면으로 항목 앞부분에 체크한 후 종료를 선택하면 비과세
항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의 과세 처리했던 지급항목을 연말정산 진행할 때 비과세로
적용하고자 할 경우 적용합니다. 기존 계산된 세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7-4. **개인별 급여 지급대장 PDF 파일 불러오기**

(1) 사번 입력 및 선택 -> **작성** 클릭 -> **PDF 불러오기(연말간소화)** 클릭 합니다.



개인별 연말정산 자료입력

사번 123

개인별 급여 지급대장

[714] 구등준

지급일자	월	금	대	상	대	과세항목	연공로수당	국외근로	야간근로	출산보육	외국근로	그밖비과세	대기제비과
2013-01-25	01	1,840,000		0	1,84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02-04	02	1,840,000	0	300,000	30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03-13	03	1,840,000	0	300,000	30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03-25	03	1,840,000	0	300,000	30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04-25	04	1,840,000	0	300,000	30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05-24	05	1,840,000	0	300,000	30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06-25	06	1,840,000	0	300,000	30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07-25	07	1,840,000	0	600,000	60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07-29	07	1,840,000	0	600,000	60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08-23	08	1,840,000	0	300,000	30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09-11	09	1,840,000	0	300,000	30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09-25	09	1,840,000	0	300,000	30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10-25	10	1,840,000	0	300,000	30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11-25	11	1,840,000	0	300,000	30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12-24	12	1,840,000	0	300,000	300,000	0	0	0	0	0	0	0	100,000
합	계	22,080,000		1,500,000	23,580,000	0	0	0	0	0	0	0	1,200,000

<<연 말 정 산 일>> 2014.02.01 2014.02

개인별 12월말 연말정산 작업을 합니다.

(2) 왼쪽 상단 **문서 찾기(PDF)** 클릭 → C:W2013년도 연말정산 PDF 폴더를 지정 확인

연말정산 하고자 하는 직원의 PDF 을 선택 후 → 오른쪽 상단 **연말정산적용** 클릭시 보여지는 화면 입니다

구분별 전자문서 API(개인연말정산)

문서찾기(PDF) C:W2013년도 연말정산 PDFW PDF 적용방법

홍길동(123456)-2013년자료.pdf

※.자동연결 방법
(연말정산) 작업시 사원을 선택하면 지정된 폴더의 PDF 파일명이 사원명 일치하면 전자문서를 읽어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연결형식-사원명 (주민번호 앞8자리)
사원명PDF문서와 연결 연말정산 ☒

PDF 비밀번호 1149731 적용

연말정산적용 종료(X)

YesoneApi Setup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전통-교통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주택마련저축 주택관련금액 기부금

항목	주민번호	인적사항	상호	주민번호_주피보험	성명_주피보험자	주민_종피보험1	성명_종피보험1	주민_종피보험2	성명_종피보험2
보장성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2 소개									

합 계

(3)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화면으로 오른쪽 하단 **연말정산** 클릭 합니다.

개인별 연말정산 자료입력

사번 123 성명 홍길동 홍길동(123456)-2013년자료.pdf PDF 불러오기(연말간소화) 작성 [M] 엑셀보내기 종료 [X]

개인별 급여 지급대장

[123]구동준

지급일자	월	금	여	상	여	과세합계	연구활동비	국외근로	야간근로	출산보육	외국연근로	그밖비과세	미기재비고
2013-01-25	01	1,840,000	0	0	0	1,840,000	0	0	0	0	0	0	100,000
2013-02-04	02	0	300,000	0	0	300,000	0	0	0	0	0	0	0
2013-02-25	02	1,840,000	0	0	0	1,840,000	0	0	0	0	0	0	100,000
2013-03-13	03	0	300,000	0	0	300,000	0	0	0	0	0	0	0
2013-03-25	03	1,840,000	0	0	0	1,840,000	0	0	0	0	0	0	100,000
2013-04-25	04	1,840,000	0	0	0	1,840,000	0	0	0	0	0	0	100,000
2013-05-24	05	1,840,000	0	0	0	1,840,000	0	0	0	0	0	0	100,000
2013-06-25	06	1,840,000	0	0	0	1,840,000	0	0	0	0	0	0	100,000
2013-07-25	07	1,840,000	0	0	0	1,840,000	0	0	0	0	0	0	100,000
2013-07-29	07	0	600,000	0	0	600,000	0	0	0	0	0	0	0
2013-08-23	08	1,840,000	0	0	0	1,840,000	0	0	0	0	0	0	100,000
2013-09-11	09	0	300,000	0	0	300,000	0	0	0	0	0	0	0
2013-09-25	09	1,840,000	0	0	0	1,840,000	0	0	0	0	0	0	100,000
2013-10-25	10	1,840,000	0	0	0	1,840,000	0	0	0	0	0	0	100,000
2013-11-25	11	1,840,000	0	0	0	1,840,000	0	0	0	0	0	0	100,000
2013-12-24	12	1,840,000	0	0	0	1,840,000	0	0	0	0	0	0	100,000
합 계		22,080,000	1,500,000	23,580,000	0	0	0	0	0	0	0	0	1,200,000

<<연 말 정 산 알>> 2014.02.01 계속년월 2014.02

연말정산[A] 취소[C]

개인별 12월말 연말정산 작업을 합니다.

(4) 근무처별 명세 자료

개인별 연말정산 자료입력

사 번 123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1. 거주자

구분	주(현)근무지	타지역근무	중(전)근무지(1)	중(전)근무지(2)	중(전)근무지(3)	중(전)	합 계	항목별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근무처명	세대주구분	1. 세대주 2. 세대원	중(전)근무지1	중(전)근무지2	중(전)근무지3			
사업자번호	취업형태	N 취업형태대상(Y/N)	106-81-21879	106-81-21879	106-81-21879			
근무기간			2013.03.01	2013.03.30	2013.02.01	2013.02.28	2013.01.01	2013.01.31
감면기간								
급 여	15,583,200		1,000,000	1,500,000	2,000,000		20,083,200	
상 여	6,796,800		500,000	500,000	500,000		8,296,800	
인정상여							0	
주식매수선택							0	
우리사주조합							0	
임원퇴직소득							0	
계	22,380,000	0	1,500,000	2,000,000	2,500,000		28,380,000	

비과세/감면 명세서 [ENTER :입력][입력모드 UP/DOWN KEY 다음항목 이동] 입력 명세출력 다음화면(N)

구분	코드	주(현)근무지	타지역근무	중(전)근무지(1)	중(전)근무지(2)	중(전)근무지(3)	합 계
▶ 국외근로 100만원	M01	0	0	0	0	0	0
▶ 국외근로 200(300)만원	M02	0	0	0	0	0	0
▶ 국외근로	M03	0	0	0	0	0	0
▶ 야간근로수당	001	0	0	0	0	0	0
▶ 출산·보육수당	001	0	0	0	0	0	0
▶ 연구보조비(기업연구소)	H10	0	0	0	0	0	0
▶ 연구보조비(연구기관등)	H09	0	0	0	0	0	0
▶ 기타비과세		0	0	0	0	0	0
미기재비과세	1,200,000	중(전)미기재	2,000,000	금여외 과세소득	5,000,000	외국인세액	1.(17%)적용
구분	주(현)근무지	타지역근무	중(전)근무지(1)	중(전)근무지(2)	중(전)근무지(3)	합 계	
▶ 갑근세결정세	158,020		100,000	150,000	200,000	608,020	
▶ 지방세결정세	15,740		10,000	15,000	20,000	60,740	
▶ 농특세결정세						0	
▶ 국민연금납부	739,500		50,000	15,000	10,000	814,500	
▶ 건강보험납부	628,020		40,000	14,000	50,000	732,020	
▶ 고용보험납부	130,530		10,000	100,000	10,000	250,530	

전화면(B) 다음화면(N) 1 저장(S) 삭제(D) 프린트(P) 검색완료(X)

- ◆ 연말정산 시 첫 번째 화면으로 준비된 [개인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중(전)근무지 해당하는 경우 근무기간, 소득금액, 비과세 내용, 납부세액 등을 입력하고 “다음화면” 클릭 합니다.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중(전)근무지 별 상세내역까지 표기 해야 합니다.

- ◆ 세대주구분 선택 (세대주, 세대원 중 한 개를 선택합니다.)
세대주가 아닐 경우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 통과시 세대원으로 인식합니다.

-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인사관리-> 2.인사대장검색정정
오른쪽하단 취업청년(Y) 부분과 감면기간을 입력하면 감면기간 만큼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에 따른 소득이 비과세란 및 감면 소득란에 보여지며, 감면 받은 세액만큼 감면세액란에 집계됩니다.)

- ◆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인세액 17% 단일세율 적용에 “1”을 선택하여 연말정산 하거나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중 선택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5) 인적 공제 자료입력 (기본공제 및 부양가족 등)

◆ 연말정산 두 번째 화면으로 부양가족 별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기부금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PDF 파일로 불러온 경우는 금액확인 후 작업합니다.)

◆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소득공제 명세를 입력하고자 할 경우 오른쪽상단 라인신규(F5)을 통해 신규라인이 생성이 되면 부양가족 별로 지출된 금액을 입력, 정정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전통시장, 직불·선불카드 30% (“12년도와 동일)

현금영수증 20→30%, 신용카드 20→15%, 대중교통비 사용분 30% (“13년도 신설)

공제한도 확대: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12년도와 동일)

대중교통비 사용분 추가 100만원 (“13년도 신설)

◆ **PDF 파일 자동 적용** 등록되어있는 경우 주민번호와 성명이 일치하는 경우 PDF 파일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주의) PDF 파일에 보여지는 자료가 모두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오니 소득자들이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를 토대로 확인 후 연말정산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금액이 보이지 않으니 등록여부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PDF 파일** 을 적용한 후 재 적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연말정산간소화 PDF** 를 클릭하시면 **PDF 파일** 자료로 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6) 연말정산 자료입력

◆ 연말정산 세 번째 화면으로 인적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 상세히 추가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1. 의료비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시 의료비의 상세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 2013 귀속년도 국세청에서 집계된 내역을 의료공제 대상자별 전체 의료비 내역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집계된 자료는 증빙코드 [1번] 으로 입력)

(증빙코드가 "1" 번인 자료는 건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월세,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명세서								
월세,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명세서								
<< 월세액 소득공제 명세서 >>								
임대인성명(상호)	※ 주민(사업자번호)	임대계약서상주소	임대계약시작	임대계약종료	월세액	공제금액		
합 계					0	0		
<<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대주(빌려준사람)성명	대주주민번호	금전소비대차 계약시작	금전소비대차 계약종료	차입금이자율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원금	이자	계	
임대인성명	임대인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서상주소		임차계약시작	임차계약종료	전세보증금		

[ESC : 작업취소] [입력시 ENTER KEY 입력요]

- ◆ 월세,거주자간 입력을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으로 주택임차(취득)차입금,원리금(대출기관,거주자), 월세액 지출액에 대한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확대 - 2013년부터 적용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8.13 이후 지급분부터)

◆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금액 확대 - 2013년부터 적용

공제율: 월세 지출액의 40% -> 50%

(13.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단,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3.8.13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월세액 소득공제 요건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공제대상요건: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일자 받기 전 지급한 월세액도 소득공제 가능)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금액: 월세액의 50%.

(연 300만원 한도)

★★3.기부금명세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종류	기부금유형	기부번호	상호(법인명)	※ 사업자번호 등	※ 내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 거주	기부금액	전년도까지 공제한금액	공제대상 금액	해당년도 공제금액	해당년도 공제받지 못한금액
10	법정기부금	2012	유니세프	0 123-45-67890	1 1	홍길동	123456-1234567	1	2,000,000	100,000	1,900,000	1,900,000	0
10	법정기부금	2013	유니세프	0 123-45-67890	1 1	홍길동	123456-1234567	1	500,000		500,000	500,000	0
합 계 2 2,500,000 100,000 2,400,000 2,400,000 0 0													

※.기부금코드 : 10 : 법정기부금 40 :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관계 : 1.본인, 2.배우자, 3.직계비속, 4.직계존속, 5.형제자매, 6.그 외
 20 : 정치자금 41 : 종교단체기부금 ※.내외 : 1.내국인, 9.외국인
 30 : 특례기부금 42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부처구분 : 0.법인·사업자등록번호, 1.개인·주민등록번호
 31 :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코드 : 20, 42 은 본인외 공제가 안됩니다.

[ESC : 작업취소] [입력시 ENTER KEY 입력요]

- ◆ **기부금명세입력**을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으로 기부금 코드 별 내역에 따라 입력하셔야 합니다.
- ◆ 기부금 명세합계 화면으로 첫 화면에서 입력한 부양가족 별 기부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기부금 금액을 입력하는 화면 입니다. (※ 기부금코드 20, 42 본인만 공제 가능)

◆ 기부금 대상 (부양가족 확대) - 2011년부터 적용

공제대상 기부금 / 거주자(본인),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 만원 이하인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이 지급한 기부금.

★★4.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							
공제구분	공제소득명	금융기관코드	금융기관상호	계좌번호	납입연차	불입금액	공제금액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10	새마을금고	123-1234567890-440		2,000,000	2,000,000
12	과학기술인공제회	407	라이나생명보험(주)	123-1234567890-440		1,500,000	1,500,000
21	개인연금저축	130	신용협동조합	4-1234567890-440		3,000,000	720,000
22	연금저축	170	신한금융투자(주)	524-213242-241234817		2,000,000	500,000
31	청약저축	414	피씨에이생명보험(주)	5252-251-23412-12-12		1,200,000	480,000
32	주택청약종합저축	308	(주)신한은행	5425-234-21525-24-12		1,200,000	480,000
34	근로자주택마련저축	527	동부증권(주)	24124-1241-241241-24		1,800,000	720,000
합 계 12,700,000 6,400,000							

※.연말정산 입력내역

퇴직연금소득 불입액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항목	불입금액	항목	불입금액	항목	불입금액
1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0	21 : 개인연금저축	0	31 : 청약저축	0
12 : 과학기술인공제회	0	22 : 연금저축	0	32 : 주택청약종합저축	0
				34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0

[ESC : 작업취소] [입력시 ENTER KEY 입력요]

-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입력합니다.
- (적용방법 1) 연금, 저축등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후 작업완료 클릭 시 세 번째 화면에 자동적용
- (적용방법 2) 세 번째 화면에 개별입력 후 연금, 저축 등등 소득공제명세서를 금액 및 목록을 확인하면서 입력합니다. 작업완료를 클릭 시 일치 여부 확인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 입력 중 완료하지 않고 종료한 경우 세 번째 화면에 해당란의 금액들은 초기화 되어 "0" 이 됩니다.(입력 후 작업완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연말정산자료 찾아보기										
구분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1)	종(전)근무지(2)	종(전)근무지(3)	합계	총급여	33,380,000	사번	123	
근로비	20,583,2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83,200	근로소득공제	11,588,000	성명	홍길동	
상여	6,796,800	500,000	500,000	500,000	8,296,800	근로소득금액	21,792,000	정산월	2014.02.01	
인정상여					0			귀속년월	2014.02	
주식매수선택					0			작업성명	12월말 연말정산	
우리사주조합					0			종합검색	사용자수정 여부(U:수정)	
합계	27,38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3,380,000	미기재 비과세	3,200,000	비과세/감면 명세서		
						임원퇴직소득		구분	합계	
기부	본인	1,500,000	장래인	0	정치기부금	계	20,321,150	국외근로	100만원	
추가	배우자	1,500,000	부녀자	0	법정기부금	2,400,000	표준공제	0	국외근로	200(300)
추가	부양가족	1,500,000	자녀양육	0	우리사주조합	0	차감소득금액	0	국외근로	0
추가	경로우대	0	출산·입양자	0	지정기부금	0	소기업·소상공인	0	아간근로수당	0
추가	다자녀추가	0	한부모가족	0	개인연금지출	0	창의저축	0	출산·보육수당	0
추가	국민연금	814,500	군인연금	0	주거마련저축	0	주택청약종합저축	0	연구보조비(기업)	0
추가	평생연금	0	사립학교직원	0	투자조합출자	0	근로자주택마련저축	0	연구보조비(연구)	0
추가	과학교육인	1,500,000	연금저축	2,000,000	고용유지대출	0	신용카드등	0	연구보조비(특별)	0
추가	근로자퇴직	500,000	별정우체국	0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0	우리사주조합출	0	연구보조비(고등)	0
추가	건강보험료	732,020	대출기관	0	종합소득과세표준	0	목돈만드는 전세	0	연구보조비(연구)	0
추가	고용보험료	250,530	거주자	440,000	산출세액	0		0	연구보조비(고등)	0
추가	보장성보험	1,000,000	월세액	0	세액감면	0	근로소득	0	연구보조비(유아)	0
추가	장래인전용	0	15년미만	0	소득세법	0	납세조합공제	0	비과세차감금	0
추가	의료비(장래)	0	15-29년	0	조세특례제한법	0	기부정치자금	0	보육교사 근무한	0
추가	의료비(기타)	7,498,600	30년이상	0	조세특례(30조)	0	외국납부	0	사람유치원 교사	0
추가	교육비(장래)	0	고정·비거주	0	조세조각	0	세액공제계	0	취재수당	0
추가	교육비(기타)	8,000,000	기타대출	0	세액감면계	0		0	별지수당	0
추가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재해관련금여	0	
추가	결정세액	0	0	0	0			정부공공기관이주	0	
추가	중(전)근무지	100,000	10,000		110,000			무보수위원수당	0	
추가	중(전)근무지	150,000	15,000		165,000			외국주동권민권	0	
추가	중(전)근무지	200,000	20,000		220,000			주식매수선택권	0	
추가	주(현)근무지	158,020	15,740		173,760				0	
추가	차감징수세액	-608,020	-60,740	0	-668,760				0	

◆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 (2013년 분),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한도제외 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 공제, 4대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 관련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8) 외국인근로자 17% 선택 시 연말정산

개인별 연말정산자료 찾아보기

사 번 123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1. 거주자 ※ 생산직 적용방법

구분	주(현)근로자	타지역근로	총(전)근로자(1)	총(전)근로자(2)	총(전)근로자(3)	총(전)	합 계
근로처명	세대주구분	1. 세대주 2. 세대원	총전근로자1	총전근로자2	총전근로자3		
사업자번호	취업년월	취업월년대상(Y/N)	106-81-21879	106-81-21879	106-81-21879		
근로기간			2013.03.01 2013.03.30	2013.02.01 2013.02.28	2013.01.01 2013.01.31		
감면기간							
급여	15,583,200		1,000,000	1,500,000	2,000,000	20,083,200	
상여	6,796,800		500,000	500,000	500,000	8,296,800	
인정상여						0	
주식매수선택권						0	
우선사주조합						0	
임원퇴직소득						0	
합 계	22,38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8,380,000	

비과세/감면 명세서 [ENTER: 입력] [입력모드 UP/DOWN KEY 다음항목 이동] 입력 명세서 출력 다음화면(4)

구분	코드	주(현)근로자	타지역근로	총(전)근로자(1)	총(전)근로자(2)	총(전)근로자(3)	합 계
▶ 국외근로 100만원	M01	0	0	0	0	0	0
국외근로 200(300)만원	M02	0	1,200,000	1,200,000	0	0	2,400,000
국외근로	M03	0	2,200,000	2,200,000	0	0	2,200,000
아간근로수당	Q01	0	0	0	0	0	0
출산·보육수당	Q01	0	0	0	0	0	0
연구보조비(기업연구소)	H10	0	0	0	0	0	0
연구보조비(연구기관등)	H09	0	0	0	0	0	0
합 계			3,400,000	1,200,000	0	0	4,600,000

미기재비과세 1,200,000 총(전)미기재 급여외 과세소득 외국인세액 1. (17%) 적용

구분	주(현)근로자	타지역근로	총(전)근로자(1)	총(전)근로자(2)	총(전)근로자(3)	합 계
갑근세결정세	158,020		100,000	150,000	200,000	608,020
지방세결정세	15,740		10,000	15,000	20,000	60,740
농특세결정세						0
국민연금납부	739,500		50,000	15,000	10,000	814,500
건강보험납부	628,020		40,000	14,000	50,000	732,020
고용보험납부	130,530		10,000	100,000	10,000	250,530

전 화면 [B] 다음 화면 [N] 1 계속 검색 [F] 전 자료 [L] 저장 [S] 삭제 [D] 프린트 [P] 검색 완료 [X]

◆ 외국인근로자 ①(17%) 적용하면 연간 근로소득(비과세포함)의 17%를 결정세액으로 적용합니다.

Ex) $(28,380,000(\text{과세소득}) + 4,600,000(\text{기재비과세}) + 1,200,000(\text{미기재비과세})) \times 0.17 (17\%) = 5,810,600$

개인별 연말정산자료 찾아보기

사 번 123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1. 거주자 ※ 생산직 적용방법

구분	주(현)근로자	타지역근로	총(전)근로자(1)	총(전)근로자(2)	총(전)근로자(3)	합 계
급여	15,583,200		1,000,000	1,500,000	2,000,000	20,083,200
상여	6,796,800		500,000	500,000	500,000	8,296,800
인정상여						0
주식매수선택권						0
우선사주조합						0
합 계	22,38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8,380,000

비과세/감면 명세서 [ENTER: 입력] [입력모드 UP/DOWN KEY 다음항목 이동] 입력 명세서 출력 다음화면(4)

구분	코드	주(현)근로자	타지역근로	총(전)근로자(1)	총(전)근로자(2)	총(전)근로자(3)	합 계
▶ 국외근로 100만원	M01	0	0	0	0	0	0
국외근로 200(300)만원	M02	0	1,200,000	1,200,000	0	0	2,400,000
국외근로	M03	0	2,200,000	2,200,000	0	0	2,200,000
아간근로수당	Q01	0	0	0	0	0	0
출산·보육수당	Q01	0	0	0	0	0	0
연구보조비(기업연구소)	H10	0	0	0	0	0	0
연구보조비(연구기관등)	H09	0	0	0	0	0	0
합 계			3,400,000	1,200,000	0	0	4,600,000

미기재비과세 1,200,000 총(전)미기재 급여외 과세소득 외국인세액 1. (17%) 적용

구분	주(현)근로자	타지역근로	총(전)근로자(1)	총(전)근로자(2)	총(전)근로자(3)	합 계
갑근세결정세	158,020		100,000	150,000	200,000	608,020
지방세결정세	15,740		10,000	15,000	20,000	60,740
농특세결정세						0
국민연금납부	739,500		50,000	15,000	10,000	814,500
건강보험납부	628,020		40,000	14,000	50,000	732,020
고용보험납부	130,530		10,000	100,000	10,000	250,530

전 화면 [B] 다음 화면 [N] 1 계속 검색 [F] 전 자료 [L] 저장 [S] 삭제 [D] 프린트 [P] 검색 완료 [X]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17%를 적용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으로 결정세액은 연간 근로소득(비과세포함) 17%를 결정세액으로 적용합니다. 비과세는 "0" 으로 표기 됩니다.

◆ 외국인공제금액의 '-4,600,000' 실제 결정세액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시 총 급여 표시를 공제하기 위해 설정된 메뉴입니다. 2008년 부터는 합계(계)의 금액과 총 급여상의 금액이 다르게 출력됩니다.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감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8. 연말정산 작업안내

8-1. 반석급여 로그인 ▶▶ 4. 연말정산 ▶▶ 1. 12월말 연말정산작업

2013 연도 연말정산

2013 연도 연말정산

연말정산작업 연말정산 세액공제 일차입력 연말정산시 비과세항목 설정
연말정산
 1. 개인별 연말정산 자료입력
 2. 연말정산 입력자료가 없는사람

연말정산은 약년 02월 01일 부터 02월 말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일 2014.02.01

주의 : 연말정산을 하기전에 매대 지급된 금액이나 상여금은 팔려 연말 자료에올을 하여야합니다.

☒ 기부금 전년도 대입

< 비과세 항목 중 지급명세 조회 항목 선택 >

☒ 소득 대(PAYN) → 부분비과세(PAYN)
☒ 차 램 유지비(PAY4) → 비과세(지급금세외)

1. 개인별 연말정산 자료입력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으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나 특별공제가 있는 경우 선택진행

2. 연말정산입력자료가 없는 사원

기본공제 외 다른 사항이 없는 경우 일괄계산이 됩니다.

(추가메뉴) 기부금 전년도 이월 (V 체크) 확인

(기존사원) 2011년도 기부금 이월금액이 있을 경우 이월 반영됩니다.

2013 연도 연말정산

연말정산작업 연말정산 세액공제 일자입력 연말정산시 비과세항목 설정

지급대상 지급일자 (우분→1.금예 2.상매)

연월 2014.02.25 17

공제일자장(S) 종료(X)

* 연말정산 급여 반영일자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월 급여 일자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해당하는 일자의 공제항목에 연말정산란이
보여지며 소득세, 주민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집계됩니다.)

2013 년도 연말정산

2013 년도 연말정산

연말정산직접 연말정산 세액공제 일지업액 연말정산시 비과세항목 설정

☐ 기 분 급 (PAYA) → 급료항목 (PAYA)	
☐ 직 세 수 당 (PAVD) → 과세수당 (PAVC)	
☐ 연장근로수당 (PAVC) → 과세수당 (PAVC)	
☐ 연 차 수 당 (PAYE) → 과세수당 (PAVE)	
☐ 기 타 수 당 (PAVD) → 과세수당 (PAVD)	
☐ 상여금 (PAYO) → 상여금항목 (PAYO)	

기부금적용 보조비환율(개별정산시만적용) 선택

* 당해 년도 지급된 급여 중 비과세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선택하는
화면으로 항목 앞부분에 체크한 후 종료를 선택하면 비과세
항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의 과세 처리했던 지급항목을 연말정산 진행할 때 비과세로
적용하고자 할 경우 적용합니다. 기존 계산된 세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8-2. 개인별 급여 지급대장

(1) 사번 입력 및 선택 -> **작성** 클릭 -> 오른쪽 하단 **연말정산** 클릭 합니다.

개인별 연말정산 자료 입력

개인별 급여 지급대장

[123] 구동준

지급일자	월	금	내	상	내	과세한계	연금활동비	국외근로	야간근로	출산보육	외국원근로	그밖비과세	대가제비과
2013-01-25	01	1,840,000	0	0	1,84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02-04	02	0	0	300,000	0	300,000	0	0	0	0	0	0	0
2013-02-25	02	1,840,000	0	0	1,84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03-13	03	0	0	300,000	0	300,000	0	0	0	0	0	0	0
2013-03-25	03	1,840,000	0	0	1,84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04-25	04	1,840,000	0	0	1,84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05-24	05	1,840,000	0	0	1,84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06-25	06	1,840,000	0	0	1,84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07-25	07	1,840,000	0	0	1,84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07-29	07	0	0	600,000	0	600,000	0	0	0	0	0	0	0
2013-08-23	08	1,840,000	0	0	1,84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09-11	09	0	0	300,000	0	300,000	0	0	0	0	0	0	0
2013-09-25	09	1,840,000	0	0	1,84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10-25	10	1,840,000	0	0	1,84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11-25	11	1,840,000	0	0	1,840,000	0	0	0	0	0	0	0	100,000
2013-12-24	12	1,840,000	0	0	1,840,000	0	0	0	0	0	0	0	100,000
합	계	22,080,000	0	1,500,000	23,580,000	0	0	0	0	0	0	0	1,200,000

개인별 12월말 연말정산 작업을 합니다.

(2) 근무처별 소득자료 입력

개인별 연말정산 자료입력

사 번 123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1. 거주자

구분	주(현)근무지	타지역근무	중(전)근무지(1)	중(전)근무지(2)	중(전)근무지(3)	중(전)	합 계
근무처명	세대주구분	1. 세대주 2. 세대원	중전근무지1	중전근무지2	중전근무지3		
사업자번호	취업청년	N	106-81-21879	106-81-21879	106-81-21879		
근무기간			2012.01.01	2012.01.31	2012.02.01	2012.02.28	2012.03.01
급여	14,293,520		1,000,000	1,500,000	2,000,000		18,793,520
상여	7,455,000		500,000	500,000	500,000		8,955,000
인정상여							0
주식매수선택							0
우리사주조합							0
계	21,748,520	0	1,500,000	2,000,000	2,500,000		27,748,520

비과세/감면 명세서 [ENTER:입력][입력모드 UP/DOWN KEY 다음항목 이동] 입력 명세서 출력 다음화면(N)

구분	코드	주(현)근무지	타지역근무	중(전)근무지(1)	중(전)근무지(2)	중(전)근무지(3)	합 계
▶ 국외근로 100만원	M01	0	0	0	0	0	0
국외근로 200(300)만원	M02	0	0	0	0	0	0
국외근로	M03	0	0	0	0	0	0
마감근로수당	001	0	0	0	0	0	0
출산·보육수당	001	0	0	0	0	0	0
연구보조비(기업연구소)	H10	0	0	0	0	0	0
연구보조비(연구기관등)	H09	0	0	0	0	0	0
미기재비과세	1,200,000	중(전)미기재	2,000,000	급여외 과세소득	5,000,000	외국인세액	1.(15%)적용
구분	주(현)근무지	타지역근무	중(전)근무지(1)	중(전)근무지(2)	중(전)근무지(3)	합 계	
갑근세결정세	135,060		100,000	150,000	200,000		0
지방세결정세	13,480		10,000	15,000	20,000		0
농특세결정세							0
국민연금납부	900,960		50,000	15,000	10,000		0
건강보험납부	718,020		40,000	14,000	50,000		0
고용보험납부	111,365		10,000	100,000	10,000		0

전화면(B) 다음화면(N) 1 저장(S) 삭제(D) 프린트(P) 검색완료(X)

※.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구분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중소기업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인사관리-> 2.인사대장검색 정정 오른쪽하단 취업청년(Y)부분과 감면기간을 입력하신후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여부와 기간을 입력 할 경우 기간내의 소득금액이 감면소득란에 표기되고, 세액감면 부분의 조세특례(30조)에 표기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기간내의 급여/상여 계산시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되어 소득세액이 이루어집니다.

- ◆ 연말정산 시 첫 번째 화면으로 준비된 [개인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중(전)근무지 해당하는 경우 근무기간, 소득금액, 비과세 내용, 납부세액 등을 입력하고 “다음화면” 클릭 합니다.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중(전)근무지 별 상세내역까지 표기 해야 합니다.

- ◆ 세대주구분 선택 (세대주, 세대원 중 한 개를 선택합니다.)
세대주가 아닐 경우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 통과시 세대원으로 인식합니다.

-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인사관리-> 2.인사대장검색정정 오른쪽하단 취업청년(Y) 부분과 감면기간을 입력하면 감면기간 만큼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에 따른 소득이 비과세란 및 감면 소득란에 보여지며, 감면 받은 세액만큼 감면세액란에 집계됩니다.)

- ◆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인세액 17% 단일세율 적용에 “1”을 선택하여 연말정산 하거나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중 선택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3) 인적 공제 자료입력 (기본공제 및 부양가족 등)

◆ 연말정산 두 번째 화면으로 부양가족 별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기부금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PDF 파일로 불러온 경우는 금액확인 후 작업합니다.)

◆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소득공제 명세를 입력하고자 할 경우 오른쪽상단 라인신규(F5)을 통해 신규라인이 생성이 되면 부양가족 별로 지출된 금액을 입력, 정정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전통시장, 직불·선불카드 30% (“12년도와 동일)

현금영수증 20→30%, 신용카드 20→15%, 대중교통비 사용분 30% (“13년도 신설)

공제한도 확대: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12년도와 동일)

대중교통비 사용분 추가 100만원 (“13년도 신설)

(4) 연말정산 자료입력

◆ 연말정산 세 번째 화면으로 인적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 상세히 추가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1. 의료비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시 의료비의 상세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 2013 귀속년도 국세청에서 집계된 내역을 의료공제 대상자별 전체 의료비 내역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집계된 자료는 증빙코드 [1번]으로 입력)
(증빙코드가 “1”번인 자료는 건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 월세,거주자간 입력을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으로 주택임차(취득)차입금, 원리금(대출기관, 거주자), 월세액 지출액에 대한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확대 - 2013년부터 적용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8.13 이후 지급분부터)

◆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금액 확대 - 2013년부터 적용

공제율: 월세 지출액의 40% -> **50%**

(13.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단,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3.8.13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월세액 소득공제 요건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공제대상요건: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일자 받기 전 지급한 월세액도 소득공제 가능)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금액: **월세액의 50%.**

(연 300만원 한도)

★★3.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총액7,000,000

EXCEL

PRINT

기부금 명세서

신규[(F5)]

삭제[(F6)]

작업완료(X)

기부금 코드	기부금 유형	기부 연도	기부처		기부자			건수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 금액	해당년도 공제 금액	해당년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
			상호(법인명)	※ 사업자번호 등	※ 내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달금액	이월금액
10	법정기부금	2012	유니세프	0 123-45-67890	1 1	홍길동	123456-1234567	1	2,000,000	100,000	1,900,000	1,900,000	0
10	법정기부금	2013	유니세프	0 123-45-67890	1 1	홍길동	123456-1234567	1	500,000		500,000	500,000	0
*							-						
10 : 법정기부금													
20 : 정치자금													
30 : 특례기부금													
31 : 공익법인기부													
40 : 종교단체외지													
41 : 종교단체기부													
42 : 우리사주조합													
합 계			2						2,500,000	100,000	2,400,000	2,400,000	0

※.기부금코드 : 10 : 법정기부금 40 :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관계 : 1.본인, 2.배우자, 3.직계비속, 4.직계존속, 5.형제자매, 6.그 외
20 : 정치자금 41 : 종교단체기부금 ※.내외 : 1.내국인, 9.외국인
30 : 특례기부금 42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부처구분 : 0.법인·사업자등록번호, 1.개인·주민등록번호
31 : 공익법인기부선탁 ※.기부금코드 : 20, 42 은 본인미외 공제가 안됩니다.

[ESC : 작업취소] [입력시 ENTER KEY 입력요]

◆ **기부금명세입력**을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으로 기부금 코드 별 내역에 따라 입력하셔야 합니다.

◆ 기부금 명세합계 화면으로 첫 화면에서 입력한 부양가족 별 기부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기부금 금액을 입력하는 화면 입니다. (**※ 기부금코드 20, 42 본인만 공제 가능**)

◆ 기부금 대상 (부양가족 확대) - 2011년부터 적용

공제대상 기부금 / 거주자(본인),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이 지급한 기부금.

★4.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

공제구분	공제소득명	금융기관코드	금융기관상호	계좌번호	납입연차	불입금액	공제금액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10	새마을금고	123-1234567890-440		2,000,000	2,000,000
12	과학기술인공제회	407	라이나생명보험(주)	123-1234567890-440		1,500,000	1,500,000
21	개인연금저축	130	신용협동조합	4-1234567890-440		3,000,000	720,000
22	연금저축	170	신한금융투자(주)	524-213242-241294817		2,000,000	500,000
31	청약저축	414	피씨에이생명보험(주)	5252-251-23412-12-12		1,200,000	480,000
32	주택청약종합저축	308	(주) 신한은행	5425-234-21525-24-12		1,200,000	480,000
34	근로자주택마련저축	527	동부증권(주)	24124-1241-241241-24		1,800,000	720,000
						12,700,000	6,400,000

※ 연말정산 입력내역 [ESC : 작업취소] [입력시 ENTER KEY 입력요]

퇴직연금소득 불입액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항목	불입금액	항목	불입금액	항목	불입금액
1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0	21 : 개인연금저축	0	31 : 청약저축	0
12 : 과학기술인공제회	0	22 : 연금저축	0	32 : 주택청약종합저축	0
				34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0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입력합니다.

(적용방법 1)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후 작업완료 클릭 시 세 번째 화면에 자동적용

(적용방법 2) 세 번째 화면에 개별입력 후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를 금액 및 목록을 확인하면서
입력합니다. 작업완료를 클릭 시 일치 여부 확인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 입력 중 완료하지 않고 종료한 경우 세 번째 화면에 해당란의
금액들은 초기화 되어 “0” 이 됩니다.(입력 후 작업완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연말정산완료 내역

구분	주(한)근로자	총(전)근로자(1)	총(전)근로자(2)	총(전)근로자(3)	합 계	총 급여	사별
급여	20,583,2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83,200	33,380,000	123
상여	8,798,800	500,000	500,000	500,000	10,298,800	11,586,000	설면
연봉상여						21,792,000	장산원
주식매수선택권							2014.02.01
우리사주조합							2014.02
합 계	29,382,000	1,500,000	2,000,000	2,500,000	33,380,000	45,368,000	12월말 연말정산

구분	합 계
국외근로	100,000
국외근로	200,000
국외근로	300,000
국외근로	400,000
국외근로	500,000
국외근로	600,000
국외근로	700,000
국외근로	800,000
국외근로	900,000
국외근로	1,000,000
국외근로	1,100,000
국외근로	1,200,000
국외근로	1,300,000
국외근로	1,400,000
국외근로	1,500,000
국외근로	1,600,000
국외근로	1,700,000
국외근로	1,800,000
국외근로	1,900,000
국외근로	2,000,000
국외근로	2,100,000
국외근로	2,200,000
국외근로	2,300,000
국외근로	2,400,000
국외근로	2,500,000
국외근로	2,600,000
국외근로	2,700,000
국외근로	2,800,000
국외근로	2,900,000
국외근로	3,000,000
국외근로	3,100,000
국외근로	3,200,000
국외근로	3,300,000
국외근로	3,400,000
국외근로	3,500,000
국외근로	3,600,000
국외근로	3,700,000
국외근로	3,800,000
국외근로	3,900,000
국외근로	4,000,000
국외근로	4,100,000
국외근로	4,200,000
국외근로	4,300,000
국외근로	4,400,000
국외근로	4,500,000
국외근로	4,600,000
국외근로	4,700,000
국외근로	4,800,000
국외근로	4,900,000
국외근로	5,000,000
국외근로	5,100,000
국외근로	5,200,000
국외근로	5,300,000
국외근로	5,400,000
국외근로	5,500,000
국외근로	5,600,000
국외근로	5,700,000
국외근로	5,800,000
국외근로	5,900,000
국외근로	6,000,000
국외근로	6,100,000
국외근로	6,200,000
국외근로	6,300,000
국외근로	6,400,000
국외근로	6,500,000
국외근로	6,600,000
국외근로	6,700,000
국외근로	6,800,000
국외근로	6,900,000
국외근로	7,000,000
국외근로	7,100,000
국외근로	7,200,000
국외근로	7,300,000
국외근로	7,400,000
국외근로	7,500,000
국외근로	7,600,000
국외근로	7,700,000
국외근로	7,800,000
국외근로	7,900,000
국외근로	8,000,000
국외근로	8,100,000
국외근로	8,200,000
국외근로	8,300,000
국외근로	8,400,000
국외근로	8,500,000
국외근로	8,600,000
국외근로	8,700,000
국외근로	8,800,000
국외근로	8,900,000
국외근로	9,000,000
국외근로	9,100,000
국외근로	9,200,000
국외근로	9,300,000
국외근로	9,400,000
국외근로	9,500,000
국외근로	9,600,000
국외근로	9,700,000
국외근로	9,800,000
국외근로	9,900,000
국외근로	10,000,000

◆ 개인에 대한 연말정산 입력을 완료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으로 입력자료를 확인 후
맞을 경우 반드시 “저장 [S]” 을 클릭한 후 “검색완료[X]” 을 선택합니다.

◆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공제한도: 2,500 만원

한도 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 (2013년 분),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한도 제외 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 공제, 4대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 관련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6) 외국인근로자 17% 선택 시 연말정산

개인별 연말정산자료 찾아보기

사 번 123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1. 거주자 ※ 생산직 적용방법

구분	주(현)근로자	타지역근로	총(전)근로자(1)	총(전)근로자(2)	총(전)근로자(3)	총(전)	합 계	항목별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근로처명	세대주구분	1. 세대주 2. 세대원	총전근로자1	총전근로자2	총전근로자3			※주(현)근로자, 총(전)근로자를 구분
사업자번호	취업종류	취업형태상(Y/N)	106-81-21879	106-81-21879	106-81-21879			하대 기재 하대 하대 총(전)근로자의
근로기간			2013.03.01 2013.03.30	2013.02.01 2013.02.28	2013.01.01 2013.01.31			근로처명, 사업자번호, 근로기간도
입정상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								※총(전)근로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카주조합								납세조합 및 총(전)에 check를 하면
임원퇴직소득								총(전)근로자 자료로 3개 사업장 자료
계							28,380,000	입력 가능합니다.

비과세/감면 명세서 [ENTER : 입력] [입력모드 UP/DOWN KEY 다음항목 이동] 입력 명세서 출력 다음화면(4)

구분	코드	주(현)근로자	타지역근로	총(전)근로자(1)	총(전)근로자(2)	총(전)근로자(3)	합 계	
▶ 국외근로 100만원	M01	0	0	0	0	0	0	※2009년 지급조서 제출분부터는 근로처
국외근로 200(300)만원	M02	0	1,200,000	1,200,000	0	0	2,400,000	별로 비과세소득을 따로 명시하셔야
국외근로	M03	0	2,200,000	2,200,000	0	0	2,200,000	하대 비과세소득별로 구분하여 지급조
아간근로수당	Q01	0	0	0	0	0	0	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Q01	0	0	0	0	0	0	※총(전)근로자 기납부세액을 입력할 때
연구보조비(기업연구소)	H10	0	0	0	0	0	0	에는 총(전)근로자 지급명세서 상의
연구보조비(연구기관등)	H09	0	0	0	0	0	0	결정세액을 입력하셔야 하오니 기
계							4,600,000	납부 세액 입력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미기재비과세 1,200,000 총(전)미기재 1,200,000 급여외 과세소득 1,200,000 외국인세액 1,170,000 적용

구분	주(현)근로자	타지역근로	총(전)근로자(1)	총(전)근로자(2)	총(전)근로자(3)	합 계	
갑근세결정세	158,020		100,000	150,000	200,000	608,020	
지방세결정세	15,740		10,000	15,000	20,000	60,740	
농특세결정세						0	
국민연금납부	739,500		50,000	15,000	10,000	814,500	
건강보험납부	628,020		40,000	14,000	50,000	732,020	
고용보험납부	130,530		10,000	100,000	10,000	250,530	

전화면 [1] 다음화면 [1] 1 계속검색 [F] 전자료 [L] 저장 [S] 삭제 [D] 프린트 [P] 검색완료 [X]

◆ 외국인근로자 ①(17%) 적용하면 연간 근로소득(비과세포함)의 17%를 결정세액으로 적용합니다.

Ex) $(28,380,000(\text{과세소득}) + 4,600,000(\text{기재비과세}) + 1,200,000(\text{미기재비과세})) \times 0.17 (17\%) = 5,810,600$

개인별 연말정산자료 찾아보기

사 번 123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1. 거주자 ※ 생산직 적용방법

구분	주(현)근로자	타지역근로	총(전)근로자(1)	총(전)근로자(2)	총(전)근로자(3)	합 계	출 금 여	사 번
근로처명	세대주구분	1. 세대주 2. 세대원	총전근로자1	총전근로자2	총전근로자3			123
사업자번호	취업종류	취업형태상(Y/N)	106-81-21879	106-81-21879	106-81-21879			성 명
근로기간			2013.03.01 2013.03.30	2013.02.01 2013.02.28	2013.01.01 2013.01.31			홍길동
입정상여								생 연월
주식매수선택								2014.02.01
우리카주조합								귀속년월
임원퇴직소득								2014.02
계						28,380,000		작업선택

비과세/감면 명세서 [ENTER : 입력] [입력모드 UP/DOWN KEY 다음항목 이동] 입력 명세서 출력 다음화면(4)

구분	코드	주(현)근로자	타지역근로	총(전)근로자(1)	총(전)근로자(2)	총(전)근로자(3)	합 계	
▶ 국외근로 100만원	M01	0	0	0	0	0	0	종합소득 사용자수정 여부(U:수정)
국외근로 200(300)만원	M02	0	1,200,000	1,200,000	0	0	2,400,000	비과세/감면 명세서
국외근로	M03	0	2,200,000	2,200,000	0	0	2,200,000	구분 합 계
아간근로수당	Q01	0	0	0	0	0	0	▶ 국외근로 100만원
출산·보육수당	Q01	0	0	0	0	0	0	0
연구보조비(기업연구소)	H10	0	0	0	0	0	0	국외근로 200(300)
연구보조비(연구기관등)	H09	0	0	0	0	0	0	0
계							4,600,000	국외근로

미기재비과세 1,200,000 총(전)미기재 1,200,000 급여외 과세소득 1,200,000 외국인세액 1,170,000 적용

구분	주(현)근로자	타지역근로	총(전)근로자(1)	총(전)근로자(2)	총(전)근로자(3)	합 계	
갑근세결정세	158,020		100,000	150,000	200,000	608,020	
지방세결정세	15,740		10,000	15,000	20,000	60,740	
농특세결정세						0	
국민연금납부	739,500		50,000	15,000	10,000	814,500	
건강보험납부	628,020		40,000	14,000	50,000	732,020	
고용보험납부	130,530		10,000	100,000	10,000	250,530	

전화면 [1] 다음화면 [1] 1 계속검색 [F] 전자료 [L] 저장 [S] 삭제 [D] 프린트 [P] 검색완료 [X]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17%를 적용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으로 결정세액은 연간 근로소득(비과세포함) 17%를 결정세액으로 적용합니다. 비과세는 “0” 으로 표기 됩니다.

◆ 외국인공제금액의 ‘-4,600,000’ 실제 결정세액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시 총 급여 표시를 공제하기 위해 설정된 메뉴입니다. 2008년 부터는 합계(계)의 금액과 총 급여상의 금액이 다르게 출력됩니다.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감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9. 연말정산 입력자료가 없는 사원

- ◆ 기본공제 이외에 입력할 사항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입력자료가 없는 사원”을 선택하여 일괄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10. 2013 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일자입력

- ◆ 연말정산 추가 징수 및 환급을 다음연도 2월 급여에 반영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자 선택(2014 년도 2 월), 급여(1), 상여(2) 구분을 지정 후 “공제일자장” 합니다.
다음연도 급여/상여 계산 후 검색을 하면 공제항목 중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 됩니다.

11. 전산매체 제출 방법

(1) 전산매체 작성

전산매체 자료

전산매체에 의한 소득자료 제출

자료 작성 오류자료검색 사업종합산

자료작성

구분 0. 정상신고분 제출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년 간) 제출연월일 2014.01.24

제출자 법인 세무대리인 세무서코드 106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자료 2013.01.01 부터 제출 담당자 부서 경리부

국세청 신고 시스템의 사용자 ID 담당자 성명

원천징수 의무자의 E-MAIL 주소 담당자 전화 02-797-5751

전산매체작성 종료(X)

제출자	사업자번호	상 호	(주)번식시스템	대 표 자	전 화	02-797-5751			
법인등록번호	110111-								
주 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702호(구로동)								
자료구분	과 목 명	종건수	A건	B건	C건	D건	E건	소득금액총계	소득세총계
갑종 근로소득	C1068121.879	8	1	1	3	0	3	54,647,812	280,281
의료비지급명세	CA1068121.879	0			의료비 명세 지급 총액			0	
기부금지급명세	HI1068121.879	0			기부금 명세 지급 총액			0	
퇴 직 소 득	EA1068121.879	0	0	0	0	0		0	0
사 업 소 득	FI1068121.879	0	0	0	0	0		0	0
기 타 소 득	GI1068121.879	0	0	0	0	0		0	0
(비) 사업,기타	BI1068121.879	0	0	0	0	0		0	0

▶ A건→ 제출인적사항 C건→ 근로자 인적사항/근로자소득금액
B건→ 원천징수 의무자(본점, 지점) D건→ 중(건)근로자 소득지급 내용 E → 부양가족 명세 디스켓수 1 장

전자료 디스켓, 홈텍스 ▶ 전체자료 홈텍스 작성 ▶

디스켓, 홈텍스 ▶ 근로소득 의료비지급 기부금명세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미자, 미당채외) (비)사업, 기타소득

* 작업진행방법 반석급여 **로그인** ▶▶▶ 4. 연말정산 ▶▶▶ 7. 13년도 전산매체 자료

① 구 분: 0. 정상신고 분

② 제 출 자: 법인/개인/세무대리인

③ 제출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1월 1일부터 월 일 까지 (폐업 등)을 선택하여 **전산매체작성** 클릭

④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자료: 전산매체에 퇴직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포함할 경우: 2013년 1월 1일, / 포함하지 않을 경우: 2014년 1월 1일)

⑤ 전체자료 홈텍스 작성 클릭

(2) 전산매체 오류검색

전산매체 자료

전산매체에 의한 소득자료 제출

자료 작성 오류자료검색 사업종합산

오류검색 인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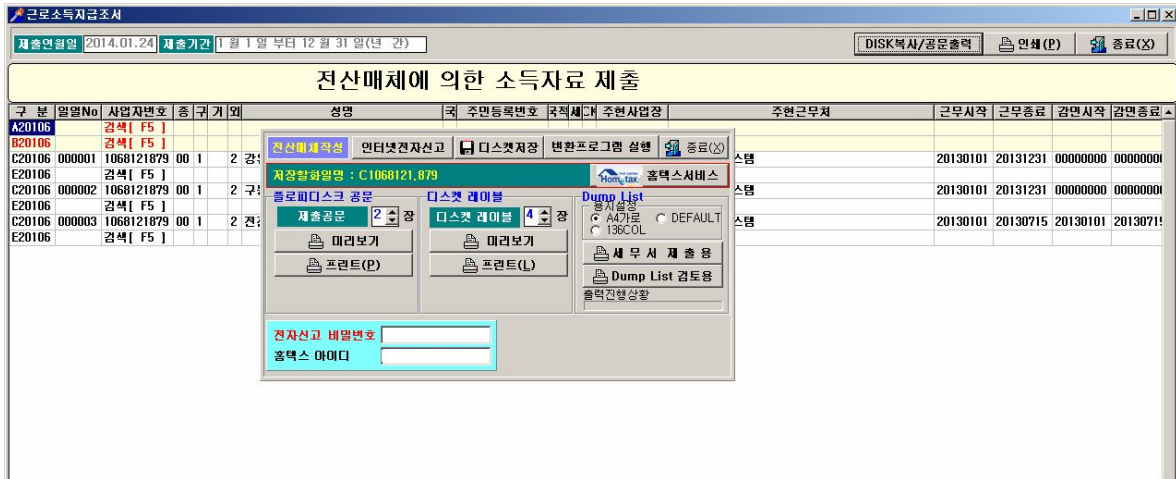
구분	번호/항목명	성명/사번	오류 내용	조치 내용
갑종	정수 의무자 표기 오류		오류없음.	
갑종	연말정산 오류			
	보험료환계		계산착오	재연말정산
의료	의료비 명세		오류없음.	
기부	기부금 명세		오류없음.	
퇴직	퇴직소득 오류		오류없음.	
사업	사업소득 오류		오류없음.	
기타	기타소득 오류		오류없음.	

◆ 전산매체작성 후 상단에 오류자료검색을 하여 오류내용을 정정 후 다시 전산매체 작성 하도록 합니다.

◆ 오류자료는 국세청 전산실에서 요구하는 형태에 맞도록 검색된 자료이며 정정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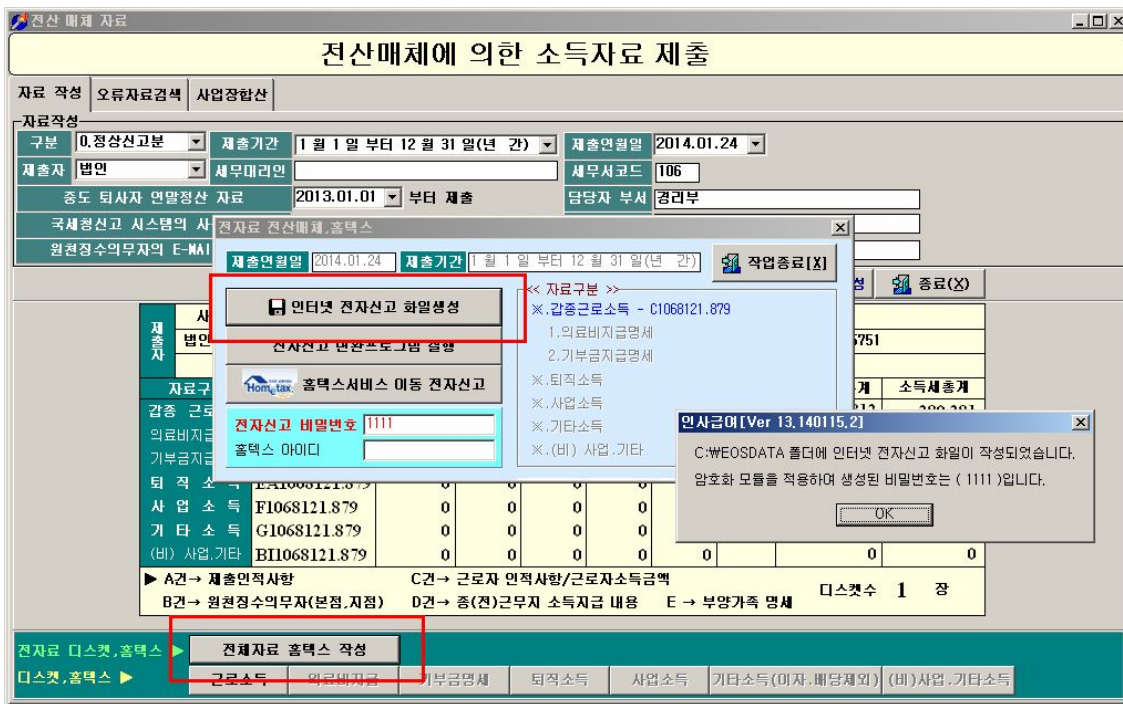
***: 오류자료 검색하여 오류 DATA가 있을 경우 전산매체 제출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전산매체 디스켓



- ◆ 전자신고가 아닌 전산매체로 신고하고자 할 경우 **DISK 복사/공문출력** 을 클릭하여 [인터넷전자신고], [디스켓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플로피디스크 공문 / 디스켓 레이블 / Dump List** 를 출력하여 내용을 확인 해 보신 후 [디스켓저장]을 통해 디스켓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 ◆ 전자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터넷전자신고** 를 통해 파일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4) 전자신고 파일 생성 (인터넷 전자신고 파일생성)



- ◆ 전산매체 작성하여 오류검증 완료된 경우 **전체자료 홈텍스 작성** ▶▶▶ **인터넷 전자신고 파일생성** 해서 보여주는 화면으로 2013 년 중에 지급조서(홈텍스 신고 전자파일) 파일을 일괄 생성됩니다.
- ◆ 근로소득/의료비/기부금/퇴직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비거주자사업기타 소득이 각기 다른 파일명으로 일괄작성이 된 화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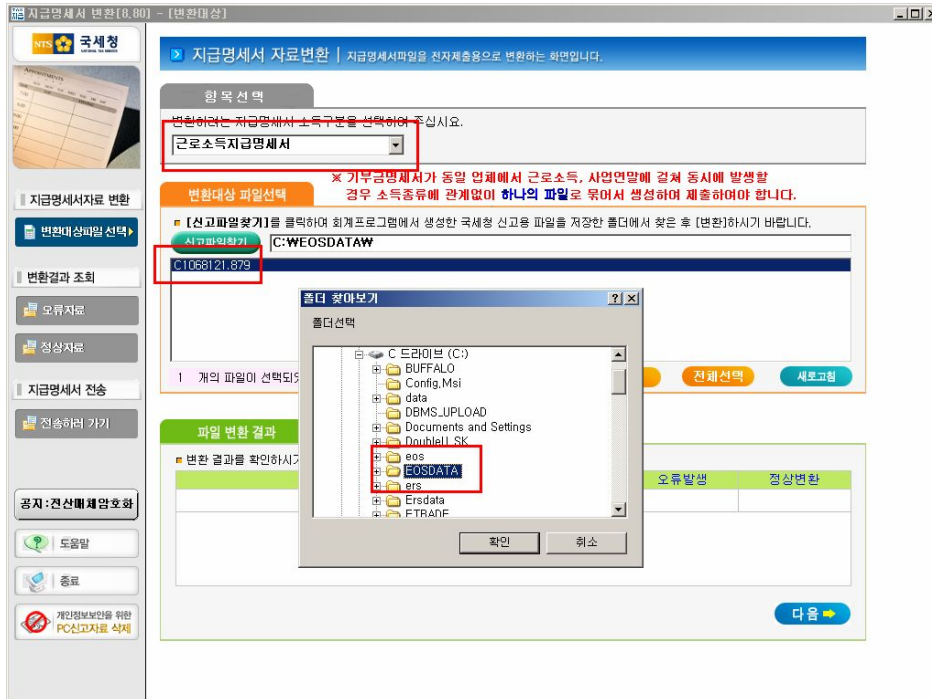
(5)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

◆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실행 ▶▶▶ 최신버전 확인 ▶▶▶ 다음

(6-1) 지급명세서 변환 1 -소득구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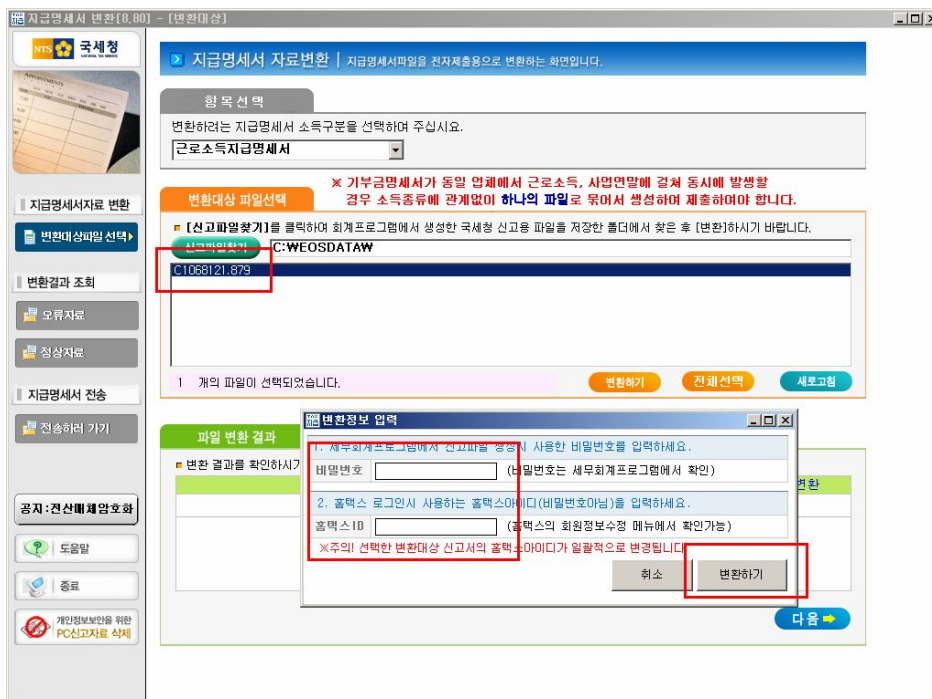
◆ 지급조서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으로 소득별로 다른 파일명으로 생성이 되기에 변환/전송도 소득별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6-2) 지급명세서 변환 2 - 파일선택



◆ 변환대상 **소득구분 선택** ▶▶▶ **신고파일 찾기** ▶▶▶ **C:\WEOSDATA 폴더 선택 확인**

(6-3) 지급명세서 변환 3 - 변환실행



◆ **해당파일** ▶▶▶ **변환하기** ▶▶▶ **홈택스 ID 입력** 확인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선택한 후 변환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으로 하단에 오류발생에 건수가 보일 경우 오류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를 전송하실 수 없습니다.

(6-4) 지급명세서 변환 4 - 변환 시 오류확인

- ◆ **오류자료**를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으로 오류내용을 보시고 연말정산자료를 수정 후 **지급명세서 변환** 작업을 합니다.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을 하셔야 하며, 오류가 다 해결되었을 경우에는 왼쪽하단 **전송하러 가기**를 통해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http://www.hometax.go.kr/eas/weoa2814.jsp>)

- ◆ 오류내용을 보시고 수정 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반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1) 지급조서 전송하기 - 홈택스 로그인

- ◆ **지급명세서 변환 후** 변환프로그램에서 **전송하러 가기**를 했을 때 보여지는 홈택스 사이트 입니다. 변환할 때 소득 별로 변환했던 것처럼 전송할 경우에는 소득 별로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7-2) 지급조서 전송하기 - 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송하기

◆ 홈택스 로그인후 나오는 메뉴로 반석프로그램으로 전산매체 작성하신 경우

방법 2.지급명세서전송(회계프로그램 등 사용자용)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전송하기** 클릭

(7-3) 지급조서 전송하기 - 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송하기

◆ 지급명세서전송 화면으로 지급명세서 변환 시 소득구분을 선택하여 변환 것처럼 전송할 소득구분 파일을 선택하신 후 **전송**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메뉴를 검색 후 해당 변환파일을 선택 전송합니다.)

12. 홈택스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국세청(홈택스) 신고기한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매월 납부사업자기준.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반기 납부사업자기준.	
신고항목	제출기한	신고항목	제출기한
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단, 반석급여에서 지원 안됨)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2014년 2월 28일까지	좌동	좌동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봉사료제외)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2014년 3월 10일까지	좌동	좌동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2014년 2월 귀속 급여, 상여)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2014년 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2014년 2월 귀속 급여, 상여)			

▶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완료 후 환급, 징수세액은 다음 년도 (2014년) 2월 급여 또는 상여에 반영 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홈택스 신고합니다.

-> 2014년도 2월 급여 또는 상여(귀속)를 2월 1일~28일 지급으로 적용합니다. (2월 귀속, 2월 지급)

-> 업체에 따라 2월 급여(귀속)를 3월에 지급하는 경우더라도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2월 급여는 위에 사항에 따라 적용하도록 합니다. (2014년 2월 귀속 / 2014년 2월 지급)

-> 2013년 연말정산 분 반영하여 2014년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실 경우에 2월 귀속/2월 지급을 선택 후 상단 연말정산을 Click 하시면 연말정산 분이 반영된 이행상황신고서가 작성됩니다.

▶ 2013년 귀속 지급명세서와 이행상황신고서는 별개의 신고로 이루어집니다.

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셨다고 해서 지급명세서 신고가 완료된 것이 아니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